保險醫學會誌 第1卷 第1號
J. of KLIMA, Vol. 1, No. 1, 1984

保險約款上의 癈疾 및 障害等級의 醫學的 考察

金 炳 極*· 孫 泰 休**· 權 泰 喜***
尹 秉 鶴****· 金 剛 石*****

Medical Approach to the Grades of Partial Disability and Disability under Insurance Policy

Kim, Byung-Kuck, M.D.* · Son, Tae Hyu, M.D.** · Kwon, Tae Hee M.D.***
Yoon, Byong Hak, M.D.**** · Kim, Kang Sueck, M.D.*****

〈目 次〉

1. 序 言
2. 癈疾條項의 根源
3. 癈疾條項의 擴大
4. 癈疾 및 障害等級
가) 우리나라 生命保險標準約款
나) 우리나라 產業災害補償保險法
다) 우리나라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라) 우리나라 軍事援護報償法
마) 美國의 癈疾保障
5. 結 言

1. 序 言

다른 科學分野와 마찬가지로 日進月步하는 醫學의 發達은 勿論, 國民食生活改善, 經濟發展等은 不可避하게 現實에 適應되어야 할 保險商品의 多樣化내지는 複雜化를 재촉하게 되었다.

從來와 같이 長期間 觀察에 依한 統計値로선 上記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여 가는 醫學의 發展이나 商品의 複雜 多樣化에 그때그때 補助를 맞추어 나가기란 참으로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臨床醫學分野와의 密接한 情報資料의 交換을 維持하여야하며 先進諸國과도 情報交換을 서둘러 우리의 實情에 알맞는 統計의 開發硏究로 恒常 適應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大韓生命保險株式會社
Daehan Life Insurance Co. Ltd.
** 第一生命保險株式會社
Jae Il Life Insurance Co. Ltd.
*** 東邦生命保險株式會社
Dong Bang Life Insurance Co. Ltd.
**** 興國生命保險株式會社
Hung Kuk Life Insurance Co. Ltd.,
***** 大韓敎育保險株式會社
Dae Han Kyouk Life Insurance Co. Ltd.

2. 癈疾條項의 根源

本來 生命保險에서는 世帶主가 死亡함으로서 그 一家族의 經濟的 損失을 保障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그러나 所得의 喪失原因이 반드시 死亡뿐이 아니다. 災害 또는 疾病에 依하여 高度의 身體障害가 永久히 남는「癈疾」또한 社會的, 經濟的으로 볼때 死亡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바로 植物人間의 경우가 그 좋은 例가 될 것이다. 歐美諸國에서는 이미 癈疾保險을 實施하고 있으며 日本 또한 1924年(大正 13年)에 官營인「簡易保險」에서 剩餘分配의 한 方法으로 이 保險을 始作하였는데 初創期에는 傷害에 依한 兩手, 兩足, 片手, 片足의 喪失, 兩眼失明에 對하여는 保險金의 納入을 免除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1932年(소화 7年) 第一生命에서 癈疾率을 算定하여 처음으로 特約을 附加하고 特別保險料를 徵收하여 癈疾以後의 保險料에 대하여는 納入을 免除하였다.

三井保險會社에서도 第一生命과 같이 이 癈疾

保險을 實施하였으나 二次大戰으로 因하여 中止되었다가 1950年(戰後)日本生命, 그리고 1951年 9個社가 保險料의 納入을 免除하는 條項을 新設하기에 이르렀다. 이中 三井保險會社等 3個會社에서는 完全癈疾에 대하여 保險金相當額의 癈疾給付金을 피보험자에게 支給하였으며 「部分癈疾에 對해서는 保險料의 納入을 免除하는 條項을 附加하였다. 現在 日本의 全 生命保險會社는 癈疾에 對하여 保險料의 免除 또는 癈疾給付金支給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3. 癈疾條項의 擴大

當初의 癈疾條項에는 4肢中에 2肢의 喪失, 兩眼失明等에 限定되었으나 時代의 흐름에 따라 條件이 완화되어 癈疾條項에 4肢의 喪失은 무릎이상, 또는 팔꿈치 관절이상 부터 팔목, 발목이상으로 擴大되고 傷害뿐만 아니라 特히 疾病에 依한 癈疾도 認定하기에 이르렀고 아울러 咀嚼, 또는 言語機能의 喪失도 追加되었다.

當時 日本은 產業經濟의 成長과 이에 따른 各種災害가 增加일로에 있었으며 또한 癈疾保險請求도 增加되었다. 이와같은 各種 경우의 請求增加는 결국 保險社의 約款適用에 문제를 發生하게 되었다. 그 例를 들어보면, 被保險者가 脊椎壓迫骨折로 因한 脊髓橫斷障害가 生겨 兩下肢가 痲痺되어 전혀 步行이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直腸, 膀胱障害까지 隨伴되어 約款에 明示된 足首以上의 下肢喪失에 比할수 없는 重態였다.

그런데 이 狀態가 產災保險의 障害等級 1級(癈疾)에는 該當되나 生命保險의 約款에는 適用되지 않음으로 因하여 紛爭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日本의 「生命+日會」에서 이것은 「約款의 解釋變更이 아니고 取扱上의 Service의 擴張」이라 하여 外傷性脊髓橫斷障害는 癈疾과 同等하게 取扱한다고 決定한 일이 있다. 이것이 1961年의 일이다.

이러한 經過를 거쳐 1964年에 簡易保險에서 約款을 改正하여 4肢中 2肢의 機能喪失을 認定하여 癈疾保險金이 支給되게 되었다. 1967年에 民營, 明治生命이 始作으로 하여 全社의 約款이 改正되었는데 그 內容은 「脊髓損傷에 依한 下肢의 用癈(身體의 一部에는 缺損은 없으나 그 機能은 完全히 喪失한 狀態를 말한다)는 癈疾이라고 規定한 것이다. 日本이 高度의 經濟成長과 交通機關의 發達로 事故가 急增함으로서 損害保險業界의 交通事故傷害保險이 爆發的으로 販賣하게 되었는데 이는 生命保險業界에 큰 자극을 주게 되었다.

즉, 生命保險側에서 傷害保險은 人保險이기 때문에 定額的性格이 강함으로 生命保險의 商品으로서 可能하다고 判斷하고 損害保險에 對抗하는 商品으로서 交通障害特約要綱案을 마련하여 그 對象을 交通事故로부터 一般의 不意의 災害에까지 擴大하는 方向으로 設計變更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業界統一商品으로서 災害保障特約으로 販賣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法에 明示된 바와같이 商法에 「……生死에 關하여……」라는 表現은 사람은 生과 死, 그 自體를 말하는 것이지 "生과 死"의 中間에 있는 疾病, 또는 創傷의 狀態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損害保險側에서 主張하고 生命保險側에서는 同法에 「……損害를 塡補한다……」의 規定을 들어 損害保險에는 傷害 및 疾病保險은 該當되지 않는다하여 生·損保間에 論爭이 생긴적이 있다. 이 論爭으로 말미암아 大藏省當局과 生損保協會 3者가 모여 協議끝에 大藏省當局에서 傷害 및 疾病保險에 關한 分野調整案을(第3者保險說, 中間保險說)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다.

"生命保險業界는 「傷害」는 特約, 「疾病保險」은 單獨商品으로 하고 損害保險業界는 「傷害」는 單獨商品, 「疾病保險」은 現行 特約以上 擴大안한다"라고 結論을 내렸다.

1976年(昭和 51年)에 約款을 改正하는데 있어서 死亡率의 低下等으로 身體障害 1級을 主契約癈疾條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 範圍를 擴大하였다.

즉 癈疾條項에 있어 不意의 事故를 原因으로 할 뿐만 아니라 疾病에 起因" 하는 것도 포함하여 保障하는 것으로 改正함으로서 身體障害等級을 新設내지는 調整하였다.

(例) 新設：1級 3；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때

新設；1級 4；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때

昇級 : 종래 2급이었던 兩上肢의 用癈, 兩下肢의 用癈를 1級으로 昇級시켰다.

不意의 事故의 날로부터 死亡, 障害狀態의 固定, 入院開始까지의 期限制限을 90일부터 180일로 연장하였다.

不意의 事故로 因한 傷害를 받은 날로부터 死亡, 또는 後遺症狀의 固定까지의 경과기간을 90일간의 觀察기간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180일로 연장하였다.

앞에서도 癈疾에 對하여 언급하였거니와 現在 日本에서는 癈疾이라는 用語대신 高度身體障害라고 使用하고 있는데 이는 「癈疾」이라는 語感이 주는 人間 輕視的인 側面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 現在 日本保險社의 災害補償은 産災法에서 定한 障害等級에 接近하도록 約款解釋을 하고 있는 實情이다.

事實 産災法이 定한 身體障害等級은 노동능력의 減少내지는 喪失을 測定하여 補償하는 것인 반면 生命保險에서는 被保險者가 任意加入이고 癈疾을 死亡에 準하여 保障하는 것이므로 굳이 産災法에서 定한 補償과 반드시 同一視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소비조합단체등에서 上記 兩者中 有利한 點만을 적용해 주도록 要求하므로 保險會社는 社會性내지는 公共性을 감안하여 약관해석을 産災保險法에 접근 解釋하고 있다.

4. 癈疾 및 障害等級

먼저 障害의 定義를 言及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障害에 對한 解釋이 機關의 特殊性이나 目的하는 바에 따라 달리 適用되고 있고 그 變遷過程等 그 歷史에 따라 나라마다 달리 解釋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 우리나라 保險産業은 100餘年의 歷史를 지닌 外國에 比하여 비록 歷史는 짧으나 初創期 우리나라 保險業에 獻身하여온 先輩들의 꾸준한 努力으로 어느나라에서도 그 例를 찾아볼 수 없으리 만큼 急進的인 伸張과 刮目할만한 發展을 거듭하여 왔다고 본다.

1976年으로 記憶하는데 政府에서 保險産業 近代化作業時 契約者側面을 考慮하여 從來의 約款에 傷害에서만 癈疾을 認定하든 6個條項 :

① 두눈이 永久히 失明되었을때

② 두손의 手關節以上이 절단되었을때

③ 두발의 足關節以上이 절단되었을때

④ 한손의 手關節과 한 발의 足關節以上이 절단되었을때

⑤ 한눈이 失明되고 한손의 手關節 또는 한발의 足關節以上이 절단되었을때

⑥ 言語 또는 씹어먹는 기능이 永久히 喪失되었을때를 疾病에 依한 癈疾인 경우에도 擴大 認定하도록하고

1977年 6月에 標準約款을 改正(재무부 보일 1223—858), 다시 1983年 生命保險標準約款(재무부 보일 1233—187)이 改正되어 다음과 같이 癈疾條項 2個項을 追加하기에 이르렀다.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障害를 남겨서 平生看護를 받아야 할때,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障害를 남겨서 平生 看護를 받아야 할때

아울러 癈疾判定時期도 「癈疾狀態가 確定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事故日로 부터 90日이 지난날 現在의 癈疾狀態의 診斷을 基準으로 한다」라고 明文化하였다. 現在 約款의 身體障害等級은 1級에서 6級까지 分類되어 있으며 1級은 癈疾을 뜻하고 傷害뿐만 아니라 疾病으로 因하여 身體障害等級 1級에 該當될 경우에도 癈疾(1級)로 認定하여 保險金을 支給하게 되어 있다.

即, 死亡이나 癈疾을 同等視한다고 할까? 바꿔서 말하면 癈疾은 高度의 身體障害가 永久히 남아 平生 看護를 要하게 되는 것이므로 社會的으로나 經濟的으로도 死亡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 約款의 特徵은 保險金支給에 있어 職業, 年齡, 所得(賃金)과 關係없이 障害그 自體의 程度에 따라, 다시 말하여 그 結果에 依하여 保障하고 있다는 點이다.

우리나라도 外國과 같이 처음에는 傷害에 依한 癈疾만 認定되던 것이 점차 擴大 완화되어 疾病에 依한 癈疾도 認定되게 되었다.

保險商品 開發에 있어서도 國民이 保險에 對한 認識度가 높아지고 保障에 對한 必要性이 점차 增大됨에 따라 商品과 保障內容도 多樣化되어 一般死亡과 災害死亡의 保障內容을 달리하는

商品도 開發되었다.

이에따라 癈疾에 있어서도 疾病癈疾과 災害癈疾이 區分되어 疾病癈疾은 一般死亡에 準하여 保障하고 災害癈疾은 災害死亡에 準하여 保障하는 것이 現在의 一般的인 추세이다.

나)우리나라 産業災害補償保險法關係條文：法第9條의 5；障害給與, 令第13條；障害給與의 等級基準.

障害라함은 「業務上 負傷 또는 疾病이 治癒되었을때 殘存하는 永久的인 精神的 또는 肉體的 毁損狀態(癈疾)로 因하여 생긴 勞動力의 喪失이나 減少를 말한다. 永久的이란 「原則的으로 治癒時 將來 回復의 可能性이 없다고 하는 程度에 依하여 解釋하여야 하므로 肉體的 毁損狀態임이 醫學的으로 그 存在가 認定될뿐, 被害者의 年齡, 職業等 諸般條件은 障害程度를 決定하는데 全혀 考慮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障害等級은 1級부터 14級까지 細分化되어 있으며 補償方法은 平均賃金개념에 依하되 그 障害程度에 따라 이에 對한 勞動力 消失度를 測定하여 保償支給하고 있다. 여기서 業務上 「負傷 또는 疾病의 限界에 對하여는 解釋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初創期에는 相當한 論爭이 있었던 것으로 記憶된다. 現在는 業務上 負傷 또는 疾病을 擴大 완화解釋하는 傾向이다.

다) 우리나라 損保의 自動車保險에 있어 障害라 함은 「身體機能의 永久的 毁損狀態를 말한다 즉, 交通事故로 被害者가 負傷하여 治癒를 받은 결과 그 負傷이 治癒되었거나 身體에 精神的 또는 肉體的 毁損狀態가 永久的으로 殘存하게 되어 생긴 勞動力의 減少를 指稱한다. 여기서 永久的이란 「原則的으로 治癒時 將來 더이상의 好轉을 期待할 수 없는 狀態를 意味한다」라고 되어 있다. 上記와 같이 交通事故에 依한 傷害와 相當한 因果關係가 證明되어야 하며 交通事故로 일어난 傷害와 發顯된 障害와의 사이에 原因과 結果의 關係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疾病으로 因한 障害는 障害補償對象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야기다. 障害等級分類는 産災補償等級과 大同小異하다.

라) 우리나라 軍事援護報償法

이 法의 目的은 이 法 第1條에 明示한바와 같이 軍事援護對象者인 除隊軍人, 傷痍軍警, 戰歿軍警의 遺族을 適用者(第2條)로 이들의 保護와 犧牲에 對한 報償基本事項을 規定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69年 11月에 大統領令 第4275號로 制定公布된 「傷痍軍警醫療規程」에 障害關係事項을 明文化하였는데 이 規程은 軍事援護報償法,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 韓國援護福祉公團法에 依한 傷痍軍警의 傷痍區分, 傷痍程度의 審査判定, 加療와 보철구의 制作, 供給 및 支給節次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이 令 第4條의 判定基準이 되는 「傷痍軍警傷痍區分表」는 1級～3級으로 區分하고 分類番號를 適用細分化하고 있으며 特殊傷痍軍警區分表는 等級없이 1分類부터 5分類까지로 하고 있다.

軍事援護償法 第5條 2項에서 規定한 1級은 傷痍程度가 極甚하여 他人의 看護없이 活動이 不可能한 者로 하고 있는데 1級의 細部內容은 保險約款障害等級 1級(癈疾)과 거의 같다.

마) 美國의 障害保障은 前述한 日本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保障方法과 保障內容과는 相異하다. 즉 우리나라나 日本의 경우에 있어서는 障害等級에 따라 保障하고 있으나 美國의 경우 職業과 所得의 減少에 對한 保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比較 檢討하기가 매우 어렵다.

1) 美國의 癈疾保障方法

美國生命保險에서 癈疾危險을 保障하기 始作한 것은 1800年代 末期였으며 처음에는 癈疾時에 保險料納入을 免除하는 것으로 出發하여 後期에는 保險料의 納入을 免除할 뿐만 아니라 廢疾期間中에 所得을 保障하는 形態로 發展하였다. 現在는 거의 모든 癈疾保障(納入免除와 所得保障)은 特約으로 主保險에 追加하여 加入하도록 設計되어 있으므로 主保險의 保障과는 別途로 취급된다.

즉 癈疾로 因하여 保險料納入免除와 所得保障의 혜택을 받는 中이라 하더라도 死亡時에는 別途死亡保險金이 支給되도록 設計된것이 美國에서 癈疾危險을 保障하는 通常的인 方法이다.

2) 美國에서의 Total Disability(完全癈疾)의 定義

美國에서 癈疾의 保障이 始作된것은 保險會社

들의 自發的인 의사에 依한 것이므로 會社마다 約款의 規定이 다른것이 事實이다.

그리고 保險은 聯邦法이 아니라 州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美國全體에 일률적으로 통용되는 Total Disability의 개념을 求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의 3가지 見解가 보통 法庭에서 採擇된다.

첫째, 文字的인 解釋으로서 "被保險者가 事故 및 疾病으로 因하여 所得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職業에도 종사할 수 없게된 狀態"를 Total Disability로 規定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定義는 아주 소수의 법정에서 채택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좀더 合理的인 解釋으로 "被保險者가 事故 및 疾病으로 因하여 통상적인 自身의 職業 또는 自身의 訓練, 教育等에 비추어 자신에게 적합한 職業에 종사할 수 없게된 狀態"를 Total Disability로 規定하는 것이다.

주로 大多數의 法庭이 이 解釋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實際的으로 通用되는 해석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셋째, 아주 進步的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해석은 "被保險者가 自身의 通常的인 職業에 종사할 수 없게된 狀態"를 Total Disability라고 본다.

그러나 이 해석을 받아들이는 법정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상에서 언급한 3가지 定義 이외에도 一部라는 定義들이 주장된바 있지만 모두가 被保險者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또는 자신의 통상적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된 狀態를 원인에 상관없이 Total Disability로 規定한다.

3) 美國에서 使用하는 Total Disability와 우리의 癈疾개념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일시적이라도 소득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면 美國에서는 Total Disability라는 말을 使用한다. 그러나 우리가 癈疾이라는 말을 사용할때에는 회복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교통사고로 1개월 입원했을 경우는 1개월간 Total Disability라고 말할수 있으나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癈疾은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癈疾」이란 개념에 가장 가까운 用語를 찾는다면 Total and Permament Disability가 될 것이다.

4) Total and Permament Disability(完全 및 永久癈疾)

"나"項에서 Total Disability의 개념은 說明하였으므로 Permament의 개념만 추가로 說明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문자 그대로 Permament는 영구적인것 즉 피보험자의 殘餘生存期間 全部를 意味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해석되었다.

즉 Total Diability상태가 피보험자의 殘餘生存기간 全般에 걸쳐서 回復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現在 大部分의 約款이 6個月間 계속 Total Disability 상태가 지속되었으면 Permament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條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Total Disability가 실제로 영구적이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Total and Permament Diability란 통상 被保險者가 疾病 또는 事故로 因하여 6個月以上 통상적인 自身의 職業 또는 自身의 훈련, 教育等에 비추어 自身에게 適合한 職業에 종사할 수 없게된 狀態를 意味하게 된다.

5) Partial Disability(部分癈疾)

部分癈疾이란 "被保險者가 疾病 또는 事故로 因하여 主된 業務中에서 一部를 遂行할수 없게 된 상태"를 意味한다.

이 경우 完全癈疾과 마찬가지로 保險料는 納入免除되며 所得保障은 一定率로 計算支給된다.

즉 所得喪失率이 ×%라면 完全癈疾의 경우에 支給되는 所得保障金額에다가 所得喪失率 ×%를 곱해서 얻어진 金額을 支給하는 것이 보통이다.

5. 結 言

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外因에 依한 障害保障에 對하여는 別異論이 없었으나 疾病(內因的)으로 因한 癈疾의 解釋과 더불어 約款의 改正 내지는 癈疾條項의 追加等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日本의 경우는 生命保險에서의 保障과 產災法에 依한 保障이 根原的으로 그 趣旨가 다르나

約款의 解釋에 있어 産災法에 接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生命保險業界의 社會性과 公共性加入者의 不平解消等을 考慮하여 産災法에 接近 해석하는 것 같다.

나) 여기서 指摘하고 싶은것은 美國의 例이다. 언뜻보기에는 相當히 複雜한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合理的인 것 같다. 資料의 不充分으로 分析評價를 못하게 된것을 有感스럽게 생각한다.

美國의 例는 여러가지 우리의 生活여건 내지는 風習, 思考方式의 差異는 있을지 모르나 앞으로 좀더 깊이 있게 研究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 끝으로 前述한 것과 같이 여기서 提言하고 싶은것은 傷害로 因한 障害等級과 같이 疾病으로 因한 障害等級이 있어야 할것 같다.

왜냐하면 疾病으로 因한 完全癈疾은 現在 保障받을 수 있으나 部分癈疾(準癈疾)에는 全혀 保障해줄 길이 없다. 우리 生命保險業界 自體가 社會保障이라고 하는 側面에서 볼때 마땅히 部分癈疾(準癈疾)에 對해서도 災害의 경우와 같이 保險料의 免除를 해주는 것과 같은 商品의 開發이 必要하다고 본다.

例를 들어서 完全廢疾이 100點이라면 部分廢疾(準廢疾)이 90點내지는 80點일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問題가 될것이다.

즉 公平性과 衡平의 原則에 어긋난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資料의 미숙으로 完全한 論文이 되지 못한데 대하여 讀者여러분에게 未安하게 생각할 따름이다.

參 考 文 獻

1) 日本保險醫學會誌 Vol, 77, 1979.
2) 日本保險醫學會誌 Vol. 78, 1980.
3) 日本保險醫學會誌 Vol. 80, 1982.
4) 生命保險標準約款：財務部 保 1, 1233—187 (83.4.2).
5) 障害等級認定 및 判定要領(障害補償)—78年 10月 發行, 楊元植編.
6) 自動車事故 後遺障害者의 障害等級判定基準解說, 韓國自動車保險(株).
7) 傷痍軍警醫療規定 및 同施行規則, 援護處.
8) Law and the life Insurance Contract Janice E. Greider, William T. Beadles 共著. (Richard D. Irwin Inc. 1979).
9) Principle of life Insurance Janice E. Greider, William T. Beadles共著. (Richard D. Irwin Inc, 1979).

〈裏面 表 1~3 繼續〉

表 1. 生命保險約款上의 傷害等級分類表

제 1 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종신토록 항시 간호를 요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종신토록 항시 간호를 요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제 2 급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열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때 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부터 4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부터 4까지중 또는 제 4 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 3 급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척추에 현저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1. 한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 5 급	1. 한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1. 한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손의 모지 및 시지이외의 한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 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表 2. 産災身體障害等級表

	第 1 級 (1,340日分)
1	두 눈이 失明된 者
2	咀嚼과 言語의 機能이 全廢된 者
3	精神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恒常 介護를 要하는 者
4	胸腹部臟器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恒常 介護를 要하는 者
5	半身不隨가 된 者
6	두 팔을 肘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7	두 팔의 機能이 全廢된 者
8	두 다리를 膝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9	두 다리의 機能이 全廢된 者

第2級 (1,190日分)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02以下로 된 者
2	두 눈의 視力이 0.02以下로 된 者
3	두 팔을 腕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4	두 다리를 足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第3級 (1,050日分)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06以下로 된 者
2	咀嚼 또는 言語의 機能이 全廢된 者
3	精神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終身토록 勞務에 從事하지 못하는 者
4	胸腹部臟器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終身토록 勞務에 從事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手指를 모두 喪失한 者

第4級 (920日分)

1	두 눈의 視力이 0.06 以下로 된 者
2	咀嚼과 言語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3	鼓膜의 全部의 缺損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두 귀의 聽力을 全혀 喪失한 者
4	한 팔을 肘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5	한 다리를 膝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6	두 손의 手指가 모두 廢用된 者
7	두 발을 "리스푸링" 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第5級 (790日分)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1以下로 된 者
2	한 팔을 腕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3	한 다리를 足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4	한 팔의 機能이 全廢된 者
5	한 다리의 機能이 全廢된 者
6	두 발의 足趾를 모두 喪失한 者

第6級 (670日分)

1	두 눈의 視力이 0.1以下로 된 者
2	咀嚼 또는 言語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3	鼓膜의 大部分의 缺損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두 귀의 聽力이 耳殼에 接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解得하지 못하는 者
4	脊柱에 顯著한 畸形이나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5	한 팔의 3大關節中의 2個關節이 廢用된 者
6	한 다리의 3大關節中의 2個關節이 廢用된者
7	한 손의 5個의 手指 또는 拇指와 示指를 包含하여 4個의 手指를 喪失한 者

第7級 (560日分)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6 以下로 된 者
2	鼓膜의 中等度의 缺損이나 그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두 귀의 聽力이 40센티미터 以上의 거리에서는 普通말소리를 解得하지 못하는 者
3	精神에 障害가 남아 輕易한 勞務以外에는 從事하지 못하는 者
4	神經系統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輕易한 勞務以外에는 從事하지 못하는 者
5	胸腹部臟器의 機能에 障害가 남아 輕易한 勞務以外에는 從事하지 못하는 者
6	한 손의 拇指와 示指를 喪失한 者 또는 拇指나 示指를 包含하여 3個以上의 手指를 喪失한 者
7	한 손의 5個의 手指 또는 拇指와 示指를 包含하여 4個의 手指가 廢用된 者
8	한 발을 "리스푸랑" 關節以上에서 喪失한者
9	한 팔에 假關節이 남아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10	한 다리에 假關節이 남아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11	두 발의 足趾가 모두 廢用된 者
12	外貌에 顯著한 醜狀이 남은 女子
13	兩쪽의 睾丸을 喪失한 者

第8級 (450日分)

1	한 눈이 失明되거나 또는 한 눈의 視力이 0.02以下로 된 者
2	脊柱에 運動障害가 남은 者
3	한 손의 拇指를 包含하여 2個의 手指를 喪失한 者
4	한 손의 拇指와 示指가 廢用된 者 또는 한 손의 拇指나 示指를 包含하여 3個以上의 手指가 廢用된 者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以上 短縮된 者
6	한 팔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이 廢用된 者
7	한 다리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이 廢用된者
8	한 팔에 假關節이 남은 者
9	한 다리에 假關節이 남은 者

10	한 발의 5個의 足趾를 모두 喪失한 者
11	脾臟 또는 한 쪽의 腎臟을 喪失한 者

第9級 (350日分)

1	두 눈의 視力이 0.6以下로 된 者
2	한 눈의 視力이 0.06以下로 된 者
3	두 눈에 半盲症, 視野狹窄 또는 視野變狀이 남은 者
4	두 눈의 眼瞼에 顯著한 缺損이 남은 者
5	코가 缺損되어 그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6	咀嚼과 言語의 機能에 障害가 남은 者
7	鼓膜의 全部의 缺損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한 귀의 聽力을 全혀 喪失한 者
8	한 손의 拇指를 喪失한 者 또는 示指를 包含하여 2個의 手指를 喪失한 者 또는 拇指와 示指 以外의 3個의 手指를 喪失한者
9	한 손의 拇指를 包含하여 2個의 手指가 廢用된 者
10	한 발의 第1足趾를 包含하여 2個以上의 足趾를 喪失한 者
11	한 발의 足趾가 모두 廢用된 者
12	生殖器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13	精神에 障害가 남아 從事할 수 있는 勞務가 相當한 程度로 制限된 者
14	神經系統의 機能에 障害가 남아 從事할 수 있는 勞務가 相當한 程度로 制限된 者

第10級 (270日分)

1	한 눈의 視力이 0.1 以下로 된 者
2	咀嚼 또는 言語의 機能에 障害가 남은 者
3	14個 以上의 齒牙에 對하여 齒科補綴을 加한 者
4	鼓膜의 大部分의 缺損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한 귀의 聽力이 耳殼에 接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解得하지 못하는 者
5	한 손의 示指를 喪失한 者 또는 拇指와 示指以外의 2個의 手指를 喪失한 者
6	한 손의 拇指가 廢用된 者 또는 示指를 包含하여 2個의 手指가 廢用된 者 또는 拇指와 示指 以外의 3個의 手指가 廢用된者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以上 短縮된 者
8	한 발의 第1足趾 또는 그 外의 4個의 足趾를 喪失한 者
9	한 팔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10	한 다리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第11級 (200日分)

1	두 눈의 眼球에 顯著한 調節機能障害나 또는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2	두 눈의 眼瞼에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3	한 눈의 眼瞼에 顯著한 缺損이 남은 者
4	鼓膜의 中等度의 缺損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한 귀의 聽力이 40센티미터 以上의 거리에서는 普通 말소리를 解得하지 못하는 者
5	脊柱에 畸形이 남은 者
6	한 손의 中指 또는 藥指(環指)를 喪失한 者
7	한 손의 示指가 廢用된 者 또는 拇指와 示指以外의 2個의 手指가 廢用된 者
8	한 발의 第1足趾를 包含하여 2個以上의 足趾가 廢用된 者
9	胸腹部臟器에 障害가 남은 者

第12級 (140日分)

1	한 눈의 眼球에 顯著한 調節機能障害 또는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2	한 눈의 眼瞼에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3	7個以上의 齒牙에 對하여 齒科補綴을 加한 者
4	한 귀의 耳殼의 大部分이 缺損된 者
5	鎖骨, 胸骨, 肋骨, 肩胛骨이나 또는 骨盤骨에 顯著한 畸形이 남은 者
6	한 팔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의 機能에 障害가 남은 者
7	한 다리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의 機能에 障害가 남은 者
8	長管骨에 畸形이 남은 者
9	한 손의 中指 또는 藥指(環指)가 廢用된 者
10	한 발의 第2足趾를 喪失한 者 또는 第2足趾를 包含하여 2個의 足趾를 喪失한 者 또는 第3足趾 以下의 3個의 足趾를 喪失한 者
11	한 발의 第1足趾 또는 그 外의 4個의 足趾가 廢用된 者
12	局部에 頑固한 神經症狀이 남은 者
13	外貌에 顯著한 醜狀이 남은 男子
14	外貌에 醜狀이 남은 女子

第13級 (90日分)

1	한 눈의 視力이 0.6以下로 된 者
2	한 눈에 半盲症, 視野狹窄 또는 視野變狀이 남은 者
3	두 눈의 眼瞼의 一部에 缺損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缺損이 남은 者

4	한 손의 小指를 喪失한 者
5	한 손의 拇指의 指骨의 一部를 喪失한 者
6	한 손의 示指의 指骨의 一部를 喪失한 者
7	한 손의 示指의 末關節을 屈伸할 수 없는 者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以上 短縮된 者
9	한 발의 第3足趾 以下의 1個 또는 2個의 足趾를 喪失한 者
10	한 발의 第2足趾가 廢用된 者 또는 第2足趾를 包含하여 2個의 足趾가 廢用된 者 또는 第3足趾以下의 3個의 足趾가 廢用된 者

第14級 (50日分)

1	한 눈의 眼瞼의 一部에 缺損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缺損이 남은 者
2	3個 以上의 齒牙에 對하여 齒科補綴을 加한 者
3	팔의 露出面에 手掌大의 醜痕이 남은 者
4	다리의 露出面에 手掌大의 醜痕이 남은 者
5	한 손의 小指가 廢用된 者
6	한 손의 拇指와 示指以外의 手指의 指骨의 一部를 喪失한 者
7	한 손의 拇指와 示指以外의 手指의 末關節을 屈伸할 수 없는 者
8	한 발의 第3足趾以下의 1個 또는 2個의 足趾가 廢用된 者
9	局部의 神經症狀이 남은 者
10	外貌에 醜狀이 남은 男子

〔規程 別表 1〕

表 3. 傷痍軍警傷痍區分表

級數	分類番號	身體傷痍別
1級	1	두 눈이 失明된 者
	3	精神의 顯著한 障碍로 恒常 介護를 要하는 者
	4	胸腹部 臟器의 負傷으로 顯著한 機能障碍가 있어 恒常 介護를 要하는 者
	7	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다리가 喪失되거나 神經系統의 顯著한 障碍로 그 機能이 全廢된 者
	8	두팔이 손목 關節 以上 喪失되거나 그 使用이 全廢된 者
	9	두 다리가 무릎 關節以上 喪失된 者
	10	두팔의 使用이 全廢된 者
	11	두다리의 使用이 全廢된 者
	63	열손가락 및 한다리의 발목 關節 以上이 各各 喪失된 者
	66	半身(上 또는 下半身)不髓로서 活動機能이 全廢되어 恒常 介護를 要하는 者
	68	한팔과 한다리가 팔꿈치 關節 및 무릎 關節 以上 各各 喪失된 者
	101	2個部位 以上의 傷痍處가 傷痍處 綜合評價基準에 依據 1級에 該當하는 者
2級甲	2	言聲器管 또는 飮食物 씹는 器管이 喪失된 者
	5	半身(左 또는 右半身) 不髓가 된 者
	13	한팔이 팔꿈치 關節以上 喪失된 者
	14	두다리가 무릎 關節以下 喪失된 者
	15	한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矯正視力이 0.06 以下인 者 또는 두눈의 矯正視力이 0.06 以下인 者
	17	두귀의 聽力을 完全 喪失한 者
	18	言聲器管 또는 飮食物 씹는 器管의 負傷으로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19	精神異常으로 正常的인 就業이 不可能한 者
	20	胸腹部 臟器의 負傷으로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어 正常的인 就業이 不可能한 者
	22	한팔과 한다리가 喪失되거나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23	두다리가 무릎 關節以下에서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24	두팔이 팔꿈치關節 以下에서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27	열손가락이 喪失되거나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31	한다리가 무릎關節 以上 喪失된 者
	33	腦骨負傷 後遺症으로 正常的인 就業이 不可能한 者
	72	한팔이 손목關節 以下에서 喪失되고 다른팔에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78	한팔이 팔꿈치關節 以下에서 喪失되고 한다리에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79	두다리중 한발과 다른다리가 무릎關節 以上 各各 喪失된 者
	81	두발과 한팔의 팔꿈치關節 以下가 各各 喪失된 者
	82	얼굴에 顯著한 醜狀이 남아있고 두귀 및 코가 變形 또는 喪失된 者
	83	脊椎全體가 顯著하게 硬直 또는 前彎된 者
	84	生殖器의 機能이 全廢되고 膀胱에 顯著한 機能不全이 있는 者
	86	한다리가 무릎關節 以下에서 喪失되고 다른 다리의 무릎 및 股關節이 硬直된 者
	89	한다리의 高度機能障碍와 같은쪽 坐骨 또는 神經 損傷으로 正常坐位가 不可能한 者

	102	2個部位 以上의 傷痍處가 傷痍處 綜合評價基準에 依據 2級 甲號에 該當하는 者
2級 乙	21	腦骨 負傷 後遺症으로 就業上 相當한 制限을 받는 者
	25	한팔이 팔꿈치 關節 以下에서 喪失된 者
	26	한다리가 무릎關節 以下에서 喪失된 者
	28	한팔에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29	한다리에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41	두발이 喪失된 者
	45	한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矯正視力이 0.3以下인 者
	73	한팔의 3大 關節中 2個關節에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77	한다리의 3大 關節中 2個關節에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91	生殖器를 完全히 喪失한 脊
	92	脊椎負傷으로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93	音聲器管 또는 飮食物 씹는 器管에 顯著한 機能障碍가 있는 者
	94	두귀의 聽力에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95	胸腹部 臟器의 負傷으로 顯著한 機能障碍가 있는 者
	96	얼굴이 顯著하게 變形되었거나 甚한 醜狀이 있는 者
	103	2個部位 以上의 傷痍處가 傷痍處 綜合評價基準에 依據 2級 乙號에 該當하는 者
3級	12	生殖 機能이 全廢된 者
	16	한팔의 팔꿈치 關節 以下 또는 以上에서 筋萎縮 또는 神經이 麻痺된 者
	30	한다리가 무릎關節 以下 또는 以上에서 筋萎縮 또는 神經이 麻痺된 者
	32	脊椎負傷으로 顯著한 運動障碍가 있는 者
	34	音聲器管 또는 飮食物 씹는 器管에 支障을 받는 者
	35	한팔이 팔꿈치關節 以下에서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36	한다리가 무릎關節 以下에서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37	열발가락이 喪失된 者
	38	두귀의 聽力에 中等度의 機能障碍가 있는者
	39	한팔의 3大關節中 2個關節에 中等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40	한다리의 3大關節中 2個關節에 中等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42	精神障碍로 輕易한 勞務以外에는 從事하지 못하는 者
	43	胸腹部 臟器의 負傷으로 輕易한 勞務以外에는 從事하지 못하는 者
	44	神經障碍로 輕易한 勞務以外에는 從事하지 못하는 者
	46	두눈中 한눈의 視力이 0.06以下이고 다른눈의 視力이 0.1以下인 者
	47	한쪽 手掌部 또는 발이 喪失된 者
	48	한손의 다섯손가락 또는 拇指 및 示指를 包含하여 네손가락이 喪失된 者
	49	한쪽 手掌部 또는 발의 機能이 喪失된 자
	50	열발가락의 使用이 全廢된 者
	51	한눈이 失明된 者
	52	한팔의 3大關節中 1個關節에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53	한다리의 3大關節中 1個關節에 高度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
	54	한다리 또는 한팔이 5糎以上이 短縮된 者
	55	言語의 障碍를 입은 者
	56	두눈에 半盲症 視野狹窄 또는 視野變狀을 남긴 者
	57	열손가락중 다섯손가락 以上 喪失 또는 硬直된 者
	58	두손의 拇指가 喪失된 者
	59	한팔 또는 한다리에 假關節이 남아 있는 者
	60	열발가락중 다섯발가락 以上 喪失된 者
	61	두눈의 眼瞼에 顯著한 缺損을 남긴 者
	62	코가 損傷된 者
	64	한손의 다섯손가락 機能이 喪失된 者
	65	한발의 다섯발가락 機能이 喪失된 者
	67	한다리가 3糎以上이 短縮된 者
	69	두팔의 팔꿈치關節이 90度以上 屈折이 不能한 者
	70	두다리의 무릎關節이 90度以上 屈折이 不能한 者
	71	肋骨 6本以上이 除去된 者
	74	한손의 拇指를 包含하여 세손가락이 喪失된 者
	75	한손의 示指를 包含하여 세손가락이 喪失된 者
	76	音聲이 작아서 40糎以上에서 對話가 不可能한 者
	80	脾臟 또는 한쪽 腎臟이 喪失된 者
	85	두눈 眼球의 作用이 困難한 者
	87	두귀가 喪失된 者
	88	鎖骨胸骨 및 肩骨이 硬直된 者
	90	얼굴에 醜狀이 남아 있는 者

〔規程 別表 2〕

特殊傷痍軍警區分表

1. 精神에 顯著한 障碍가 있어 自虐, 狂暴한 行爲,

拒衣食症等으로 自制力이 完全 喪失되어 恒常監視狀態에서 保護를 要하는 者
2. 胸腹部 臟器의 負傷으로 因한 機能障碍로 恒常寢床生活을 要하는 者
3. 네 팔다리(두발목 關節 및 두손목 關節 以上)가 切斷되거나 脊椎損傷 또는 神經系統의 痲痺 등으로 네팔다리의 機能이 全廢된 者
4. 腦骨 負傷으로 半身不隨가 되어 步行機能이 全廢된 者로서 言語 및 聽覺機能이 全廢된 者 또는 두눈이 失明되고 言語 및 聽覺機能이 全廢되어 恒常 介護를 要하는 者
5. 〔別表 1〕의 1級分類番號에 該當하는 傷痍部位가 2個以上인者로서 恒常 起居에 介護를 要하는 者

〈裏面 表4 繼續〉

表 4. 自動車保險後遺障害等級早見表

장해계열		장해서열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제 5 급	제 6 급	제 7 급	제 8 급	제 9 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눈(眼)	眼球(兩眼)	視力障害	(1) 두눈이失明된것.	(1) 한눈이失明되고다른눈의視力이 0.02이하로된 것. (2) 두눈의시력이 0.02이하로 된것.	(1) 한눈이失明되고다른눈의視力이 0.06이하로 된것.	(1) 두눈의視力이 0.06이하로 된것.	(1) 한눈이失明되고다른눈의시력이 0.1 이하로 된것.	(1) 두눈의視力이 0.1 이하로 된것.	한눈이失明되고다른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것.	(1) 한눈이失明되거나또는한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것.	(1) 두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 것. (2) 한눈의시력이 0.06이하로 된것.	(1) 한눈의시력이 0.1 이하로 된것.			(1) 한눈의시력이 0.6 이하로 된것.	
		運動障害											(1) 두눈의안구에현저한운동장해를남긴 것.	(1) 한눈의안구에현저한운동장해를남긴 것.		
		調節機能障害											(1) 두눈의안구에현저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것.	(1) 한눈의안구에현저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것.		
		視野障害									(3) 두눈에半盲症시야협착또는시야변상을남긴 것.				(2) 한눈에반맹증시야협착또는시야변상을남긴 것.	
	眼瞼(右 또는 左)	缺損 또는 運動障害									(4) 양눈의안검에현저한결손을남긴것.		(3) 한눈의안검에현저한결손을남긴것. (2) 두눈의안검에현저한운동장해를남긴 것.	(2) 한눈의안검에현저한운동장해를남긴 것.	(3) 두눈의안검의일부에결손을남겼거나또는속눈섭이빠진흠을남긴 것.	(1) 한눈의안검의일부에결손을남겼거나또는속눈섭이빠진흠을남긴 것.

장해계열		장해서열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제 5 급	제 6 급	제 7 급	제 8 급	제 9 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귀(耳)	內耳 등(兩耳)	聽力障害				(3) 고막의 전부의 결손등으로 인하여 양귀의 청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등으로 인하여 양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면 큰소리를 해득할 수 없는것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등으로 인하여 양귀의 청력이 40 *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음성을 해득할 수 없는 것.		(7) 고막의 전부의 결손등으로 인하여 한귀의 청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등으로 인하여 한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않으면 큰소리를 해득할 수 없는 것.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등으로 인하여 한귀의 청력이 40 *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음성을 해득할 수 없는 것.			
	耳殼(右 또는 左)	缺損障害												(4) 한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것		
코(鼻)		缺損및機能障害									(5) 코를 결손하거나 그기능에 장해를 남긴 것.					
입(口)		咀嚼및言語機能障害	(2) 저작과 언어의 기능을 폐한 것.			(2) 저작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것					(6) 저작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것.					
					(2)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을 폐한 것.			(2) 저작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것				(2)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것.				
		齒牙障害										(3) 14치 이상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것.		(3) 7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가한 것.		(2) 3치 이상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것.

장해계열	장해서열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제 5 급	제 6 급	제 7 급	제 8 급	제 9 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神經系統의 機能 또는 精神	神經系統의 機能 또는精神의 障害	(3)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 언제나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것 (5) 반신불수로 된 것.		(3) 정신에 현저하게 장해를 남겨 종신노무에 종사할수 없는 것.				(3) 정신에 장해를 남겨 경이한 노무이외의 노무에 종사할 수없는 것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겨 경이한 노무외의 노무에 종사할수 없는 것.		(13)정신에 장해를 남겨 종사할 수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것. (14)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를 남겨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것			(2) 局部에 완고한 신경증상을 남긴것		(9) 局部에 신경증상을 남긴 것.
頭部, 顔面, 頸部	醜 狀 障 害							(12)여자의 외모에 현저하게 추상을 남긴 것.					(13)남자의 외모에 현저한 추상을 남긴것 (14)여자의 외모에 추상을 남긴 것.		(13)남자의 외모에 추상을 남긴 것.
胸腹部臟器 (外部生殖器를 포함한다)	胸腹部臟器의 障害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 언제나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것.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하게 장해를 남겨 종신노무에 종사할 수없는것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를 남겨 경이한 노무이외의 노무에 종사할수 없는 것. (13)양측의 고환이 상실된 것.	(11)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 상실된것	(12)생식기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것.		(9) 흉복부 장기에 장해를 남긴 것.			
體幹 脊椎	奇 形 또 는 運 動 障 害						(4)척추에 현저하게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남긴것		(2) 척추에 운동장해를 남긴 것.			(5) 척추에 기형을 남긴 것.			
體幹 其體他幹의骨	奇形障害(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을 남긴것		

장해계열		장해서열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제 5 급	제 6 급	제 7 급	제 8 급	제 9 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上肢	上肢(右 또는 左)	缺損 또는 機能障害	(6) 양상지의주관절이상이절단된것 (7) 양상지의기능이전폐된것.	(3) 양상지의완관절이상이절단된것		(4) 1상지의주관절이상이절단된것	(2) 1상지의완관절이상이절단된것 (4) 1상지의기능이전폐된것.	(5) 1상지의 3대관절중 2관절의기능을폐한것.		(6) 1상지의 3대관절중 1관절이사용불능하게 된것.		(9) 1상지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에현저한장해를남긴 것.		(6) 1상지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에장해를남긴것		
		奇形障害 (상박골또는 전박골)							(9) 1상지에가관절을남겨현저한운동장해를남긴 것.	(8) 1상지에가관절을남긴것.				(8) 장관골에기형을남긴것		
		醜狀障害														(3) 상지의노출면에손바닥만한크기의추한흔적을남긴것.
	足趾(右 또는 左)	缺損 또는					(6) 양족의족지전부가절단된 것.			(10) 1족의족지전부가절단된 것.	(10) 1족의제족지를포함한둘이상의족지가절단된 것.	(8) 1족의제 1족지또는다른 4족지가절단된것.		(10) 1족의제 2족지가절단된 것. 제 2족지를포함한 2족지가절단된것 또한제 3족이하의 3족지가절단된것	(9) 1족의제 3족지이하의하나또는둘의족지가절단된것.	
		機能障害							(11) 양족의족지의전부가사용불능하게된 것.		(11) 1족의족지의전부가사용불능하게된 것.		(8) 1족의제 1족지를포함한둘이상의족지가사용불능하게된것	(11) 1족의제 1족지또는다른 4족지가사용불능하게된것.	(10) 1족의제 2족지가사용불능하게된것. 제 2족지를포함한 2족지가사용불능하게된것또는제 3족지이하의 3족지가사용불능하게된 것.	(8) 1족의제 3족지이하의하나또는둘의족지가사용불능하게된것.